

##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매주 화요일”을 “매주 월요일”로 하고 동조 제3항중 “24시간 전  
에”를 “예정일 3일 전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회의) ① ----- <u>매주 월요일에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예정일 3일전까지</u> ----- ---</p>